

#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1999. 5. 14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9년 4월 29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4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1999년 5월 14일 (제160회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)  
상정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복지환경국장 박환규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권한위임으로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가 되어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 폐지

## 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문기)

- 조례제15조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등 주요권한을 현재 시군출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, 동사항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규정에 의거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권한재위임한 사항으로 조례폐지가 바람직함

## 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